

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2009.06.11 (목 10:30

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산업경제위원회

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1. 발의자 : 심홍섭 의원 외 6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09년 6월 5일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6월 9일

3. 제안 이유

- 국제화 촉진과 도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시행중에 있는 조례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국제민간기구를 국제기구와 연관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규정함(안 제2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국제민간기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함.